

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직무전환교육 시행계획 보고

1. 관련근거

가. 관제업무운영규정 제2장 제 11조(직무전환교육)

나. 철도안전관리체계프로그램

- 12.2.4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(관제분야 적격성 기준)

다. 종합관제센터-5839(2015.12.18) 『시스템운영부 업무분장 조정 시행』

2. 관제 업무특성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과 운용기술 습득 및 관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업무배치 변경직원에 대한 직무전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
가. 교육기간 : 2016.1.5(화) 1회차 ~ 10회차

나. 교육대상 : 업무배치 변경직원 윤양한(4급)
(일근 -> 4조 2교대 3파트)

다. 교육방법 : 개인별 담당 멘토지정을 통한 실무위주의 교육

라. 교육내용 : 교육일정표에 의거 실시

마. 세부내용 : 붙임

붙임: 직무전환교육 시행계획 1부, 끝.